

■ 판례 동향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문구를 해석할 때
‘미리’ 또는 ‘사전에’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 품목분류 동향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 개정법령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보호무역장벽 해소,
경제회복 총력 지원 ...
관세청, 올해 숨가쁘게 달린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종우

편집인 최흥식

총괄 나영주 lordme@kctdi.or.kr

편집기획 김선진 sunjin76@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5년 1월 27일(통권 제2116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C O N T E N T S



<알립니다>

통권 제2117호는 2월 10일 발간됩니다.

▲2월 3일 : 휴간, ▲2월 10일 : 제2117호, ▲2월 17일 : 제2118호

이주의 초점

- 04** 보호무역장벽 해소, 경제회복 총력 지원 ...
관세청, 올해 숨가쁘게 달린다

06 Weekly News

12 현장 특파원

관세행정실무해설

- 18** 관세행정안내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 26** 질의응답사례
수리 후 재수출 적용

판례동향

- 28** 관세판례해설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문구를 해석할 때 ‘미리’
또는 ‘사전에’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품목분류동향

- 39** 품목분류해설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 56** 세번 바로잡기
광물성 시트
- 57** 상식 밖의 상품학
코끼리 난동

최신개정법령

- 60**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62**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66** 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71** 입법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호무역장벽 해소, 경제회복 총력 지원 … 관세청, 올해 숨가쁘게 달린다

3대 목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 담은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고광호 관세청장은 1월 2일 신년사를 통해 더 나은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하며 올해 국제적으로 통상보호주의가 확산되고, 국내 경제성장 동력도 약해지는 등 관세행정 환경이 매우 엄중하고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고광호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 국민안전 위해물품 원천 차단 및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관세행정 역량 지속 강화의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1월 21일 2025년 업무계획 중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의 변화를 담은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의 구체적 내용으로 국가변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올해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불어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등 본연의 임무도 빈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먼저 관세청은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변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보호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新환경규제에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기업에 무료로 보급한다.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여기에는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 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원, 부가세 납부유예 등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도 돕는다.

사회안전 수호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도 강조했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도 빈틈없이 수행한다.

마약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인 유럽부패방지청(OLAF),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이와 함께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ray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시설도 확충한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단위 갱신 및 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안도 강화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기존 장신구·어린이제품·화장품 등에서 주방·전기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에 측정이 불가능했던 유해 물질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을 통한 판별로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경제안보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의 수사기능이 확대되고 신규제도가 도입된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TF’를 더욱 활성화해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기능이 확대되고 ‘정기 외환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해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사회 기대에 걸맞게 관세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美·日·中·베트남·싱가포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월과 7월에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을 논의한다.

이어 작년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FTA·특송통관·X-ray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

관세청은 “우리가 제시한 의제들이 표준으로 정착되면, 이미 우리 제도·시스템에 익숙한 수출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보다 수월한 환경에서 교역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광호 관세청장은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에서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업무 계획을 현실 행정으로 구현하는 데 ‘산출’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관세청, “마약 해외 유입 전면 차단”

마약밀수 유입 경로별 맞춤 검사 시행 및 주요 마약 출발국과 국제공조

마약류 관련 범죄가 지능화되고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유입을 전면 차단하고자 유입 경로별로 적합한 검사 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월 2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마약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등의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해외 공급을 차단하고자 통관검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반입 경로별 맞춤형 단속 체계를 시행하고자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항공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선별시스템을 개발·활용해 고위험 화물을 대상으로 X-ray 검색 장비 및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여행자가 신변(바디패키)·기내 수하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는 입국장 내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입국장 내부가 혼잡해진 상황을 틈탄 마약 운반책 바뀌치기 등 세관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해상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은 선박 하부에 은닉한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를 시범 운영하고, 고성능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도입해 대응한다.

또한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미국 등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공조를 보다 확대하고 독일과는 양국 최초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월 21일 관세청은 20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4년 마약밀수 단속 통계와 주요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 작년 1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건수는 총 862건, 787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20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은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4년 적발된 마약을 밀수 경로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여행자, ▲기타 경로 순이었다.

관세청 이명구 차장은 “강화된 세관 검사로 입국 시 불편하거나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 김성은 기자 |

對대만 식품 수출 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주의

올해 수입식품 검사 강화 품목에 한국産 신선포도, 고춧가루 포함

수입식품에 대한 대만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타이베이무역관은 식품 안전을 중시하는 대만이 농약 잔류 허용기준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는 대만 식약서가 수입식품 선적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이다. 작년 대만으로 수입된 식품의 전체 부적격 판정 건수는 2022년 대비 33.0% 증가했는데 이 중 잔류농약 초과 검출 건수는 45.1% 증가한 492건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선적물의 검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 미국, 베트남, 한국 순으로 집계됐다.

KOTRA는 대만 식약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인용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對한국 수입식품의 선적물 검사에서 작년 잔류농약 초과 검출 건수는 2022 ~ 2023년 연평균 두 배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7일에 첫 부적격 선적물 명단이 발표됐는데 명단에는 한국産 딸기와 굴 제품이 각각 1건씩 포함됐으며, 두 선적물 모두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반송·폐기 처분을 받았다. 처분된 물량은 딸기가 580.8kg, 굴은 1,080kg이다.

잔류농약 초과 검출 문제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 식품 유형은 신선 농산물로 작년 적발된 잔류농약 초과 검출 40건 중 22건을 차지했다. 이 중 샤인머스켓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딸기, 멜론, 키위, 배추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만 식약서는 올해 수입식품 검사 강화 품목 리스트에 한국産 신선 포도를 포함시켰고, 작년 15건의 초과 검출로 적발된 한국産 고춧가루도 함께 리스트에 포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은 대만에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이 중 과실류 농산물은 대만으로 연간 2,000만 ~ 3,000만 달러가 수출되며 한국 전체 과실류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KOTRA는 이 같은 수출 확대 추세 속에 식품 안전을 중시하는 대만이 2023 ~ 2024년에 잔류농약허용기준을 네 차례 개정하며 76개 농약 성분의 허용 기준을 375개 농작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잔류농약허용기준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대만 식약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성분은 총 411개에 이르며, 초과 검출 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선적물 검사 비율 확대, 사전 수입검사 의무화, 수입검사 신청 수리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하구현 기자 |

필리핀으로 감귤 수출 '항공기'로도 가능

필리핀으로 감귤 생과실을 수출할 때 운송수단에 항공 화물이 추가되는 등 수출검역요건이 완화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작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타결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필리핀과 감귤 생과실 수출검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선박 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 상자마다 봉인해야 했다. 게다가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웠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對필리핀 수출실적은 2013 ~ 2014년 34톤으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검역요건 완화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 화물뿐 아니라 항공 화물로도 가능하고 포장 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 검역 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해 향후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검역본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 시행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수입식품 민원 처리 알림 서비스 개시

수입식품 민원 처리 현황을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보다 상세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해외 제조업소 등록 등 총 65개 수입식품 민원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수입식품 민원 알림톡' 서비스를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식품 민원 처리 현황을 한글 40자 분량의 짧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아 상세한 처리 현황 확인이 어려웠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단계별 실시간 처리 현황을 1,000자 분량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상세히 제공한다. 접수(처리) 번호, 검사 결과, 제품명, 검사기관뿐 아니라 신청번호, 부적합 시 조치 요령 등 이전보다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입식품 민원인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수입식품 민원 알림톡'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채팅방에서 과거 민원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 정보마루' 앱과 인공지능(AI) '수입식품 FAQ 챗봇'을 활용해 수입신고 요령 등 다양한 수입식품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문자 메시지로 처리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최대 70%가량 절감할 수 있고, 민원인의 알권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대응 360조 원 수출금융 공급

수출금융협의체, 대외 불확실성 확대 따른 수출기업 전략적·체계적 지원하기로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월 20일 수출금융 협의체(Fim-ex)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논의했다.

지원단은 수출금융 지원 현황 및 기업애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작년 10월 출범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정부부처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간담회를 통해 지원단은 미국 新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향후 기업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작년 1조 2,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늘리고,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 지원사업을 작년보다 8,000억 원 증가한 2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은 기관별 주요 수출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은 반도체·배터리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부산은행과 협업해 금리를 낮추고 보증 한도는 높이는 ‘수출 패키지 우대보증’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의 무역보험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최근 환율 급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유동성을 우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출 다변화 촉진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자금 지원도 약속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대상국을 확대한 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 또한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에 5,82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단 김동준 부단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위기업종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산·원전·조선 등 유망산업이 韓·美 협력을 계기로 수출·수주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금융 협의체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고환율에 우리기업 “수출 효과 기대보다 원자재가 해외투자 부담 더 커”

고환율 기상도, 조선·자동차·기계 제외한 대다수 업종 ‘흐림’으로 나타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며 수출 효과에 대한 기대감보다 원자재 수입 비용 및 해외 투자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주요 업종별 협회 12곳과 함께 ‘고환율 기조가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상도로 표현한 결과, 바이오·반도체·배터리·철강·석유화학·정유·디스플레이·섬유패션·식품산업은 ‘흐림’으로,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은 ‘대체로 맑음’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내 기업 대부분이 원료의약품 및 소재·부품·장비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원가 상승, 해외 임상 비용 상승 등 R&D 투자 비용 증가로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의 이중고를, 철강·석유화학·정유산업은 업황 부진 속 고환율에 따른 채산성을 우려했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산업은 원가부담에 더해 해외 공장 투자가 많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섬유패션산업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전체의 약 92%에 달해 환율상승에 따른 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산업도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꼽았다. 국내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31.8%로 밀, 대두, 옥수수, 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은 수출 비중이 커 환율상승 손해가 기대되거나 장기화 시 원가상승과 수요 위축, 물류비 상승 등 역풍을 우려했다.

조선업은 작년 1~3분기 전체 수주량 중 96.3%가 해외수출 물량일 만큼 수출 비중이 크다. 또한 계약 후 대금의 상당량이 선박인도 시점에 결제돼 환율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기대된다. 다만, 조선사별 환헤지 비중이 상이해 최근 고환율 기조로 인해 해외 기자재 사용률과 라이선스 비용 상승에 따른 환율상승 효과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의 67%를 수출하는 자동차산업도 환율상승 시 일부 완성차는 단기적으로 영업이익 개선율, 기계산업은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 수입 원자재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 특성에 따라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을 기대했다. 산업연구원이 작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장비의 수입의존도는 0.134로 ICT(0.236) 등 타 산업 대비 낮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이제 막 출범한 트럼프 2기에서 관세인상, 금리인하 속도 조절 등이 시행되면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라며, “환헤지 등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과 통화 스와프라인 확대 추진, 환율 피해 산업에 긴급 운영 자금 및 금융지원 제공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하구현 기자 |

과기부, 방송·매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방송·매체(미디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차세대 방송매체(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선도’ 사업을 진행한다. 국제 경쟁력이 높은 대기업 등과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송·매체 장비·서비스 기획부터 판로 확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 방송·매체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계 시장 진출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인공지능(AI) 융합, 가상화(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요처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 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① 사업 계획 수립부터 ②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시제품 개발, ③ 시제품 제작·검증, ④ 상용화 단계까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 제품·서비스 사업화의 모든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월 12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과기부(www.msit.go.kr), 한국전파진흥협회(www.ra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개최,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

관세청은 1월 22일 ‘제43회 국제 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23개 국 대사를 비롯한 60개 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마약단속청(DEA)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91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세청의 대외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관세 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중인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 정책 성과를 알렸다.

이날 고광호 청장은 “주요국들의 新통상 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당국 간 소통과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관세청이 제안한 국제우편신고서 및 전자적 원산지증명서(e-C/O) 국제표준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 서울·부산·인천서 진행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전략물자 수출업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2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3월 4일)과 인천(4월 2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무역안보 동향과 전략물자 등의 국제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물자 수출통관 시 유의 사항, 수출통제 제도 개선 사항을 알려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시간을 통해 업계 어려움도 적극 파악할 예정이다.

설명회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제안보 부상에 탈탄소화까지 ... 올해 해운시장 녹록치 않을 것

올해 해운시장 전망을 살펴보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최대 현안으로 美·中 관세전쟁 발생 시 컨테이너 해상 물동량 변동과 선사들의 탄소중립 대응 능력을 꼽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 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 해양수산전망대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 등 해양수산 관련기관 및 단체 40여 곳이 후원한 해양수산전망대회는 매년 초 해양수산 전문가와 관련 업계, 정부가 함께 그해 해양수산 분야별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간 관세무역정보는 이날 해양수산전망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2025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출처 : 해수부)

올해 전망대회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농어업·농어촌 장태평 특별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을 비롯해 해양 분야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덕 KM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전망대회가 연초에 업계를 비롯해 국가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한 국내외 제반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국가·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트럼프 新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중국 간 교역뿐 아니라 세계 교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해양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대응 방식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진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문가와 업계, 정부가 함께 해양수산 각 분야의 시장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찾는 행사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문가의 냉철한 분석과 전망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망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거시경제 및 해양수산 종합 전망을 다루는 총괄세션과 3개 분야별 세션(해운·물류·항만, 수산·어촌, 해양)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총괄세션에서는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 전망’ 기조발제를, 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연구부원장이 ‘2025년 해양수산 전망’을 발표했다.

경제안보 부상하며 선택적 세계화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한국이 혁신성장의 기반을 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책적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촉진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통상환경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둔화되고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끼리 뭉치는 ‘선택적 세계화’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안보가 부상하고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국내 생산이 장려되면서 기술 패권경쟁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철 원장은 “과거에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확산되면 상호 의존이 커지면서 전쟁이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인식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필요한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 등 상호 의존성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고 이에 따라 경제안보가 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제통상 질서에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제안보 기반의 산업정책을 이어가 미국을 ‘요새화’하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로 돌아가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향후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에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점도 지목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관세를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제안보 기반의 산업정책을 이어가 미국을 ‘요새화’하려고 해
외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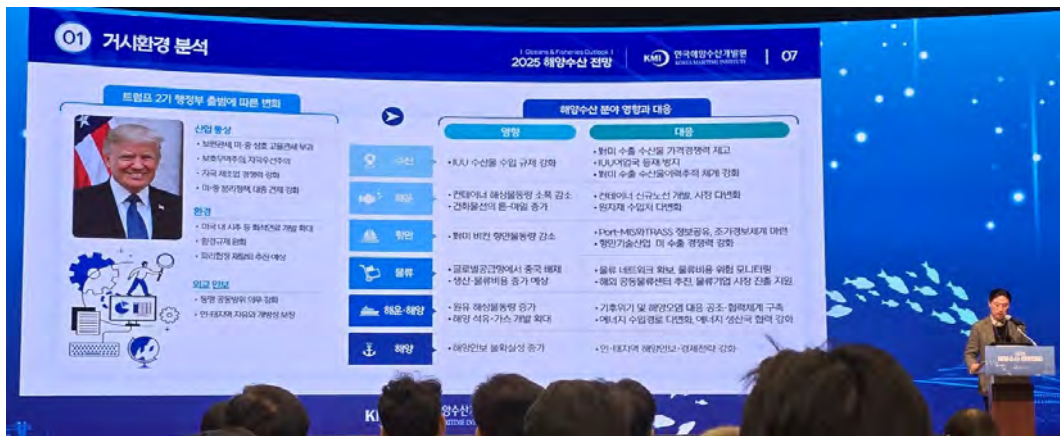
또한 한국이 저성장 시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철 원장에 따르면 내수 부진 장기화, 수출 증가세 악화로 올해 1%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 등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면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정철 원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정책을 마련해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성장 잠재력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을 독려할 범국가 차원의 혁신 성장 플랫폼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그런가 하면 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부원장은 올해 해운산업은 공급과잉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 운임 하방 압력이 존재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규제와 같은 변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원장은 “항만산업은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기존에 수주한 물량의 인도로 조선사의 실적은 개선될 것이지만 신조선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연구부원장은 올해 해운산업의 전망을 설명했다(출처 : 주간관세무역정보)

美·中 공급망 분리에 따라 물동량 증가와 항만 이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화·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ESG 경영과 친환경 설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격차로 인한 일부 항만의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변동성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최 부원장은 2024년 해운·조선업이 전체 해양수산 부가가치 성장을 견인했지만, 2025년에는 해운·조선업을 중심으로 전체 해양수산 부가가치가 소폭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는 2024년 91.0에서 2025년 87.9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운산업과 관련해 선사들이 운영 비용 효율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항만산업은 친환경 스마트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품질·생산능력 개선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산업의 과제 : 미국발 관세정책과 탄소중립

이어진 해운·물류·항만 세션에서는 KMI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실장이 ‘해운시장 시황 전망과 과제’를,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이 ‘항만물동량 전망과 과제’를, 박치병 전문연구원이 ‘해운 탄소중립 전망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실장은 글로벌 정기선 해운시장과 관련해 신조선 인도량은 221척, 198만 TEU에 달하는 반면, 해체량은 20 ~ 30만TEU에 그쳐 공급과잉으로 인한 하방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향 안정화 추세가 올해에도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세계 유조선 해운시장 전망과 관련해 2024년 원유 해상물동량은 2023년 대비 0.8% 감소했지만, 올해에는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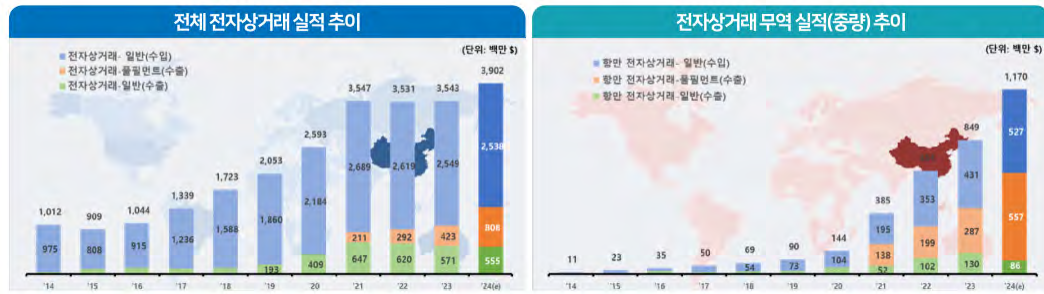
‘항만물동량 전망과 과제’를 발표한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며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홍해 리스크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추가 관세정책을 회피하고자 화주들의 조기 선적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물동량을 살펴보면, 해상물동량은 연평균 2.9% 증가했으며, 항만물동량은 연평균 3.2%, 환적물동량은 2.8% 성장했다.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전 세계 150여 개 항만 중 상하이항이 1위, 부산항이 7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4년 대비 약 2.2% 증가한 9.28억TEU로 전망된다. 특히 아시아는 중국발 공급망 재편 영향에도 남미·아프리카로 교역이 다변화하고 인도가 대체국으로 부상하는 등 물동량 증가세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항만의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에도 집중했다. 전체 전자상거래 실적은 2014년 10억 1,000만 달러에서 2023년 35억 4,000만 달러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항만 전자상거래 실적은 2014년 1,0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 8억 5,000만 달러로 성장했는데 증가세는 연평균 62.3%에 달한다. 2024년 전체 전자상거래 산업은 10.1% 성장했으며, 항만 전자상거래 비중은 37.8% 증가했다.

최 연구실장은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 중심의 항만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항만에서 업계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통관 등 행정 지원, 항만 배후단지 입주 지원 강화 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항만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 ●



(출처 : KMI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물류·해사산업연구본부의 박치병 전문연구원은 탄소중립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해운 업계도 ‘탈탄소화’를 추구하고 있어 저탄소·무탄소 연료 및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등의 연료가 떠오르고 있지만 해운에서 활용된 경험은 없다. 박 연구원은 “연료 및 선박 구성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로 뒤따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검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등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 기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탄소중립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김형준 사업전략본부장은 친환경 연료 선택에 대해 언급했다. 선사들이 유리한 연료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중고선의 높은 가격과 함께 친환경 선박 신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한국해운협회의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협회 조사 결과 2030년까지 5년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해야 하는 노후선이나 탄소집약도지수(CII) 2등급 선박이 605척에 달하지만 발주 잔량은 55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KMI 박치병 전문연구원)

수에즈 운하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우수한 교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후티 반군 문제에 이러한 휴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분기에 수에즈 운하가 정상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량 증가율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수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올해는 변수 때문에 전망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해운 상황이나 금융 관련 전망이 나오지만, 외생 변수도 많아 쉽지 않다”라며,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의 외생 변수는 물동량이나 선박 공급 관련 분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생 변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 김성은 기자 |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미 FTA	
질문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한·미 FTA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관련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 가능하거나, 역내 생산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세관당국에 제출 가능한 경우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2. 원산지증명 제도

(1) 개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부터 2024년 한·필리핀 FTA까지 총 22건, 59개 협정이 체결돼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제도가 적용되는 협정과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신의 법적인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제도를 적용하는 협정이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협정은 기관발급·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없고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았다. 다만, 최근 발효된 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한·필리핀 FTA 등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관발급·자율발급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형태의 원산지 증명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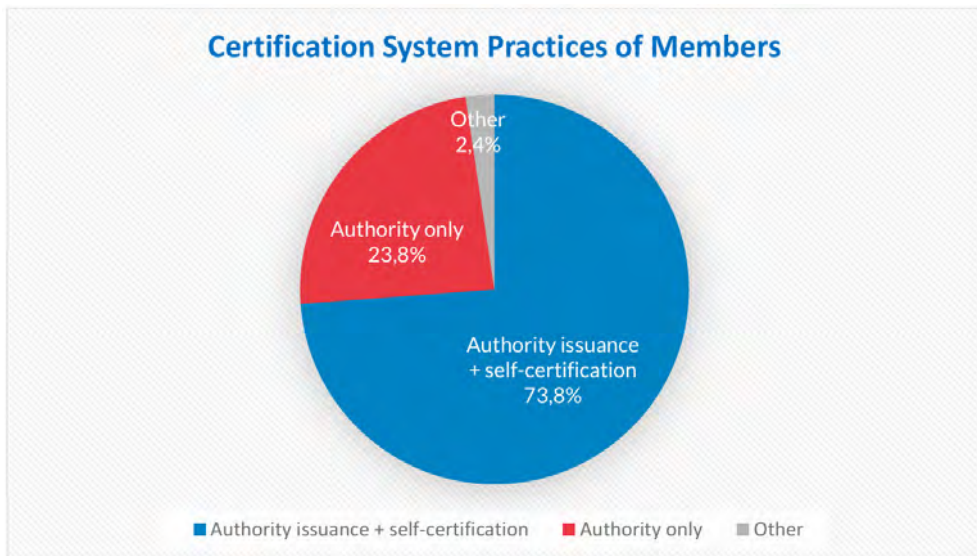
원산지증명 제도는 크게는 기관발급 그리고 자율발급 2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이고, 두 번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세 번째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방식을 합쳐 우리는 자율발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의 주제인 한·미 FTA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및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 상품의 품명, 수량, 원산지,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작성하며, 일부 FTA에서는 해당 수출 건에 대한 송품장 번호, 운송 관련 정보까지 작성한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건별로 작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지정해 동일한 물품에 대해 반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한·미 FTA의 경우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해 반복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는 협정 중 하나다. 포괄증명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수량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다.

세계관세기구(WCO)의 자료에 따르면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데, 원산지증명의 형식과 관련된 설문에 응답한 84개 세관 행정기관 중 82개 기관은 기관발급 시스템(종이 기반 원산지증명서 또는 전자 원산지증명서)을 시행하고, 전체 응답자 중 62개 회원국(73.8%)은 기관발급 시스템과 자율발급 시스템을 모두 시행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20개 회원국(23.8%)은 기관발급 시스템만 시행한다고 응답했다.

● 원산지증명 형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



출처 : WCO(2024)

(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 제도가 기관발급 그리고 자율발급의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자율발급 체계다.

자율발급은 일반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데, 통일된 서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 FTA와 달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작성 양식이 정해져 있는 FTA와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FTA가 존재한다. 또한 한·EU FTA와 같이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미 FTA는 협정문 또는 당사자 간 추가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협정이다.

협정에서는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에 관해 ①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certification)으로 이뤄지거나 ② 증명이 없어도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knowledge)만으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는 원산지증명이라는 절차 없이 수입자 인지(knowledge)에 의해 특혜관세 신청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 수입자 인지에 의한 신청이 이뤄진다고 해도 수입국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 자료 제출 요구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서류나 전자문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

또한 ①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면, 원산지증명이 작성될 때 한·미 FTA는 8가지 기재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한·미 FTA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수입자가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해진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율발급 형태의 FTA다.

■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a certification need not be made in a prescribed format, provided that the certification is in written or electronic 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elements:

-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그리고
-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그러나 한·미 FTA의 자율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없이 수출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지정된 서식조차 없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 권고서식을 마련해 수출기업에 제공함으로써 FTA 활용에 애로사항이 없게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미 FTA상 8가지 기재사항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다. 실무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도 미국도 원산지증명서의 권고서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아래 왼쪽 이미지). 또한 우리나라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는 영문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미국 측 제공 자율발급)을 안내하고 있다(아래 오른쪽 이미지).

CERTIFICATION OF ORIGIN
US-Korea FTA (19 CFR 10 Subpart B)
www.usis.com/trade/free-trade-agreements/ftas

IMPORTER
Name: _____
Address: _____
Date of Production: _____
Exported Code: _____
Country: _____
Port of Origin: _____
Event: _____
Additional information (if any): _____

EXPORTER
Name: _____
Address: _____
Date of Production: _____
Exported Code: _____
Country: _____
Port of Origin: _____
Event: _____
Additional information (if any): _____

PRODUCER
Name: _____
Address: _____
Date of Production: _____
Exported Code: _____
Country: _____
Port of Origin: _____
Event: _____
Additional information (if any): _____

Product(s) for which preference is claimed:

Business Code	Description	Quantity	Value	Country of Origin

A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is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US-KFTA) and
This document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Signature:
Name & Title: _____
Dat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ATTACHMENT A
DATA ELEMENTS FO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ION OF ORIGIN

-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importer of record of the good.
- Name and address of the export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exporter of the good.
(If different from the producer).
- Name and address of the producer:**
The legal name, address, telephone and e-mail of the producer of the good.
(If known).
- Description of good:**
The description of a good shall be sufficiently detailed to relate it to the invoice and the Harmonized System (HS) nomenclature.
-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The HS tariff classification, to six or more digits, as specified for each good in the Rules of Origin.
- Preference criterion:**
The rule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b) or Article 6.1 of the Agreement. In the case of a product-specific rule specified in General Note 33(o) or Annex 4-A or 6-A of the Agreement, please be specific as to which rule was applied.
- Single shipment:**
Provide the commercial invoice number.
- Multiple shipments of identical goods:**
Provide the blanket period in "mm/dd/yyyy" format. (12-month maximum)
-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e-mail, and certification date:**
The signee must have access to the underlying records and the legal authority to bind the company. This field shall include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and e-mail.
-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또한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EU FTA와 같이 상업서류에 원산지증명을 위한 정보를 포함해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한·미 FTA에서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송품장에 협정에서 정한 필수 정보를 모두 기재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경우

도 유효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원산지증명서가 한·미 FTA상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관세청 오류사례집을 확인하면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받은 북동부 펜실베이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한 필수 항목을 기재해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및 관련 사항 해석

해당 질문 & 답변 사례에서는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의 수출자와 한국의 수입자가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생산자(수출자)와 독일과의 거래가 이뤄지고 이차적으로 독일(한·미 FTA상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한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거래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제3국의 당사자가 개입한 거래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제3국 송장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임을 표시해야 하는지, 제3국의 당사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을 해도 한국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2) 제3국 송장 거래 시 FTA 적용 가능 여부

FTA에서 거래당사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는 거래 계약의 당사자로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수취하는 주체지만 FTA에서는 물품의 생산 및 원산지와 관련이 깊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자는 협정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판정 및 입증 책임이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생산자 또한 당사국에 소재해야 하며 물품의 생산 및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는 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등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수입자 또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자로 다른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계약

상대국에 소재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무역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며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오퍼상, 중계무역). 또는 유럽, 북미 등 아시아가 본사가 아닌 다국적기업으로서 물품은 유럽 또는 북미에서 생산되지만 아시아 시장의 관리는 아시아 지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3국의 수출자가 양 당사국 간의 거래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 거래당사자 요건이 위반돼 FTA 적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3국의 무역상이 개입한 경우에도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 요건의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의 질문 & 답변 사례를 살펴보면,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미국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싱가포르 수출자를 기재하고 생산자란에 미국 생산자를 기재해 작성 및 서명한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은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돼 있더라도 해당 증명서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 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추가로 우리나라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방법에서 수출자의 정보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국 발행 송장거래인 경우에도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에는 체약상대국(미국) 소재 수출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3) 제3국 송장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임을 표시해야 하는지

우리나라와 발효된 일부 FTA에서는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상 이를 표시해야 하는 협정이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ASEAN FTA가 해당되는데, 한·ASEAN FTA 원산지 규정 제21조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서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제13번란에 제3국 송장에 대한 표시와 해당 증명서 7번란에 제3국 발행 송장에 대한 회사의 이름, 국가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건인데도 불구하고 제3국 송장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이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산지증명서로서 특혜관세 적용이 어려워진다.

다만 모든 FTA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호주, 한·중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

명서 작성 방법에 따르면 제3국 송장이 발행될 경우 비고(Remarks)란 등에 관련 정보를 기재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즉,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 거래의 경우 가급적 원산지증명서 비고(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 거래임을 기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미 FTA 또한 제3국 송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세청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 기재하는 것이며, 생산자인 미국 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업체가 수출한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곧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인을 기재한 경우 추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4) 제3국의 당사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을 해도 한국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제3국 송장 거래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은 협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출자란에 미국 수출자를 기재하고(제3국 송장 발행 거래) 생산자란에 캐나다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자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송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구를 기재하는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신고문구를 제3국 송장 자체에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원산지 신고문구 자체는 당사국의 수출자(생산자)가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계회사인 노르웨이 업체가 스페인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해당 업체가(선적서류도 발행) 송품장에 선적지와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표기한다면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인지 문의한 사례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은 EU 회원국인 스페인을 원산지로 하고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경우라면, 스페인에 소재하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호의 답변 내용과 같이 한·미 FTA의 경우 여느 협정과 달리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될 수 있다.

당사국에 소재하는 거래당사자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협정과 달리 한·미 FTA 협정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소재지가 역외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 간 2018년 합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원칙(Customs Principl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에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통관원칙에 따른 원산지검증 업무지침」

제3조(원산지증명서 효력)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수출자, 생산자의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域外, 협정 제1.4조의 '영역' 외)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라는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역외 수출자, 생산자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요청)

①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수출자(이하 '역외 수출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수출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수출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1. 영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서류
2. 훈령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훈령 별지 제32호 서식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

② 세관장은 주소나 소재지가 역외인 생산자(이하 '역외 생산자'라 한다)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자에게 물품의 생산이 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역외 생산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생산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이는 수입통관 또는 검증 대상 선정 시 세관심사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여러 가지 서류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이 경우 역외 생산자가 역내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거나, 역외 생산자의 요청을 받은 역내 생산자가 세관장에게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제3국 송장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건이 일반 무역환경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건에 비해 검증 요청 및 서류 제출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계무역을 하는 업자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한·미 FTA의 경우 역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생산자와 역외 수출자가 원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주체와는 별개로 해당 물품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어야 하고, 간접적으로 규정됐지만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등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규정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관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FTA / 수리 후 재수출 적용

미국으로 수출한 메탈마스크를 흠집 등을 수리하고자 국내로 수입한 뒤 미국으로 재수출하려고 합니다. 최초 수출 시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재수출할 때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 지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 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것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관세청 담당 부서(FTA 집행과 042-481-3221)에서 안내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관 담당자 연락처는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 소개 > 조직 및 직원안내 > 직원안내 > 이름/주요업무로 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 전자 촉각 디스플레이의 HS Code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글이나 그림 등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전자 촉각 디스플레이의 세번이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력 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에 해당한다면 제8471.60-2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8471호 해설서에서 “(3) 출력장치(output unit) : 처리기계에 의하여 주어진 신호를 인쇄된 텍스트·도형(graph)·영상(display) 등의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변환하거나 자료의 처리·제어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호화된 자료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 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 없다)
2000	출력장치

조사 /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정품이라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가짜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판매업체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하며, 가짜상품(가짜상표 부착물품, 일명 짝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가짜상품의 유통경로에는 2가지가 있으며, ① 외국에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경우와 ② 국내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가짜상품의 유통에 대한 확인 가능한 사항을 파악하거나 증빙자료를 갖춰 위반사항 등을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밀수신고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대리접수는 불가하므로 제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 방법

‘유선전화 125 > 10’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신고하기에서 신청/접수하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가짜상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특허청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1666-6464, www.ippolice.go.kr) 또는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문구를 해석할 때 ‘미리’ 또는 ‘사전에’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

민정화 | 부산세관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진공기기, 진공장치,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인 ○○○의 한국 현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 ○○.부터 2013. ○○. ○○.까지 일본 ○○○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조달해 자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기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내·외국원재료 혼용작업에 관한 승인(이하 ‘혼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제품가격에서 외국물품인 원재료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을 과세대상으로 해 수입신고를 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면서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기 전에 내·외국물품을 혼용해 작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세관장으로부터 혼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물품 제조를 위한 혼용작업을 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8조의 단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세관장의 혼용승인일 이전에 혼용작업을 한 기간에 대해 「관세법」 제188조 단서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산정한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 주장

가.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적 제품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혼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사후에 혼용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이 사건 물품 역시 혼용작업이 개시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혼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가 부분적 제품과세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나.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혼용승인은 혼용 ‘대상 물품’에 대한 승인이지 혼용 ‘기간’에 대한 승인이 아니므로, 혼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기간에도 당연히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혼용승인신청서에 작업기간을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혼용비율 산정이 가능해 혼용물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 이상, 그 혼용제품 전체가 부분적 제품과세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가. 「관세법」

■ 제185조(보세공장)

-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 ... <중략> ...
- ⑤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⑥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86조(사용신고 등)

-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 제189조(원료과세)

-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시행령」

■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③ 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 제206조(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업무)

①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중략> ...

4.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승인연월일

나. 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제7조 및 제24조 제5항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부여 후 다른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한다)과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 <중략> ...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위탁가공계약서 등)

■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 ①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제27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월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장외작업 또는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신청은 허가받은 운영인이 원 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판결 요지

1심에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승인을 받고’ 문언만으로는 ‘사전승인’만을 의미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때 승인에는 사후승인까지를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고 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법」 제97조 제2·3항, 제98조, 제102조 제1·2항, 제106조 제3항, 제107조 제3항, 제109조, 제143조 제4항, 제160조 제2항 등에서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승인’은 문언상 사후승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런데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한 ‘세관장의 승인’은 혼용작업 이전에 이뤄는 ‘사전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아래에서 2심 판결을 자세히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받은 보세공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생산했는데,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이 함께 원재료로 투입됐다.

2) 원고는 2010. 10. 2부터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투입해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던 중 2010. 11. 12에 이르러 작업기간을 실제의 작업기간(2010. 10. 2. ~ 2010. 11. 24.)과는 전혀 다른 작업기간(2010. 11. 12. ~ 2010. 12. 12.)으로 기재한 혼용작업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날 피고로부터 혼용승인을 받는 등 모두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혼용승인을 받았다.

3) 한편 원고는 실제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세관장의 혼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용승인 전에 이미 투입된 내국물품을 모두 포함해 내·외국물품의 혼용비율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해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혼용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외국물품으로 간주된다고 봐,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물품의 공정일자별 내·외국물품 가격 산정자료를 근거로 혼용비율을 재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과세가격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나. 판결¹⁾

1) 「관세법」 제188조 단서 ‘세관장의 승인’에 사후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뒤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관계법령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취 보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한 ‘세관장의 승인’은 혼용작업 이전에 이뤄지는 ‘사전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혼용작업 이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이전에 투입된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세법」 제188조 단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

1)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55781호로 기각판결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의 내용은 단순히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혼용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관세법」 제188조 단서는 이미 그 문언상으로도 세관장의 혼용승인이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문언 내용에 '미리' 또는 '사전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은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로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울(제1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제2호)”를 들고 있다. 한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보세공장 운영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과 「보세공장 운영고시」 제21조 제1항은 승인의 대상이 되는 혼용작업이 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 역시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상태에서 장치·검사·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의미한다.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세관은 외국물품에 대해 엄격한 관리·통제를 행하는데, 보세구역은 지리적으로는 국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물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외국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고도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보세구역제도는 외국물품의 체계적 관리·감독이 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보세상태의 외국물품이 부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이라도 그 현황을 추적해 해당 물품이 어느 공정에 사용되는지, 내국물품과 혼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세법」은 ㉠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관세법」 제155조 제1항),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관세법」 제156조 제1항), ㉢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관세법」 제157조 제1항), ㉣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관세법」 제158조 제2항) 관리·

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규정에 더해 「관세법」은 ‘보세공장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관세법」 제185조 제2항), ㉡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은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관세법」 제186조), ㉢ 보세공장 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187조 제1항).

한편 보세공장을 비롯한 보세구역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외국물품을 관세가 유보된 상태로 두는 장소로서,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입을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호는 보세구역으로의 물품공급을 ‘수출’로 간주하는 등 관세법령은 보세구역을 지리적 개념의 ‘외국’과 유사하게 다루고 있다. 「관세법」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관세법」 제188조 본문), 이는 보세구역의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해 보세공장 안에서 제조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으로 봐 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관세법」은 제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에 한해 외국물품으로 간주하는 ‘부분적 제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바(「관세법」 제188조 단서),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내국물품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함으로써 그것이 과세가격에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세구역 내지 보세공장의 특성과 「관세법」의 일련의 체계에 비춰 보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혼용작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내·외국물품의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그 투입량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관세의 적정한 부과·징수를 도모함과 아울러 수출입물품의 통관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세관장은 업체의 혼용승인 신청이 있어야만 비로소 향후 내·외국물품을 혼용해 제조공정이 진행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즉 혼용작업에 대한 신청과 ‘사전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세관장은 보세공장 내에서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이 개시됨을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업체의 혼용작업은 세관장의 관리·감독의 범위 내로 들어가게 된다²⁾. 그런데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2) 원고는 “「보세공장 운영고시」 제32조 제1, 2항에 의하면,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혼용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에 필요한 내·외국물품을 기록 관리하고 세관장은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보세작업에 사용된 내·외국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세공장 운영고시」 제32조 제1, 2항의 규정을 통한 내·외국물품의 관리·감독과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을 통한 내·외국물품의 관리·감독은 그 관리 방법과 관리 시기 및 정도 등이 동일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정한 승인이 ‘사후승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와 같은 사후승인절차를 통해서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혼용작업이 이뤄지는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내·외국물품의 적정한 사용 여부와 혼용비율 등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그치게 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세관장의 관리·감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후승인’을 허용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⑤ 「관세법」 제186조는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세공장에 반입된 내·외국물품을 혼용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사용하는 한 가지 형태이므로, 그 물품에 대한 사용신고를 사용 전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 역시 혼용작업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체계상으로도 타당하다.

「보세공장 운영고시」 제18조 제1항은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첨부서류의 하나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용신고와 혼용승인의 관계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⑥ 「보세공장 운영고시」 제21조 제1항은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 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혼용작업신청서에 첨부된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통해 신청한 내역과 같은 혼용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세관장이 관리하되, 그와 같은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세목록을 주요원재료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혼용승인은 사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사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위 규정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 따른 절차가 ‘혼용작업에 대한 신청 → 세관장의 사전승인 → 세관장의 혼용작업관리’로 이어짐을 전제한 것임이 분명하다).

⑦ 「관세법」 제188조 본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제품과세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인 원재료가 사용됐더라도 이 역시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국물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 같은 원칙적·일률적인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국물품인 원재료와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부분적 제품과세제도(「관세법」 제188조 단서)와 내국물품인 원재료와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전부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원료과세제도(「관세법」 제189조)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제품과세제도, 부분적 제품과세제도, 원료과세제도의 상호관계에다가 제조과정이 진행된 이후에는 원재료의 성상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객관적·합리적 산정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은 원료과세제도뿐만 아니라 부분적 제품과세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등을 더해 보면, 원료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신청’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부분적 제품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문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후승인’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원고는 “부분적 제품과세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에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반면에, 원료과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시에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료과세의 경우에는 사전신청이 필요하지만 부분적 제품과세의 경우에는 사후승인도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원료과세나 부분적 제품과세에 있어서 사전신청 또는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세표준의 적정한 확정뿐만 아니라 수출입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그 취지가 있는 점, ㉡ 과세표준의 적정한 확정을 위해서는 부분적 제품과세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이후 승인받은 대로 혼용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³⁾ 등에 비춰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부분적 제품과세와 원료과세를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

2) 혼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기간에도 승인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 소정의 ‘세관장의 승인’은 ‘대상 물품에 대한 부분적 제품과세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세공장 운영고시」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신청서의 제목이 ‘부분적 제품과세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로 돼 있고, 이 신청서의 내용 역시 “「관세법」 제188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라고 돼 있는 것 역시 「관세법」 제188조 단서 소정의 ‘세관장의 승인’이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은 ‘대상 물품에 대한 부분적 제품과세’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고

3) 내·외국물품을 혼용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내국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연동하므로 내국물품의 투입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이 결합돼 완제품이 제조된 이후에는 완제품의 형상만으로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투입비율을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혼용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수량, 손모을 등을 확인하고 실제 제조공정이 승인받은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사전승인은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승인신청일 이전의 작업기간 동안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혼용작업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작업기간에 대해서는 부분적 제품과세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즉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 자체가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승인신청일 이전의 작업기간 동안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혼용작업을 함에 따라 그 법률 요건이 흠결된 이상, 이 작업기간 중에 투입된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부분적 제품과세에 관한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혼용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작업기간을 불문하고 부분적 제품과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두 번째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2항에서 정한 혼용비율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혼용승인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재사항인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는 혼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혼용승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 되는 것은, 혼용승인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 혹은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에 작업기간을 잘못 기재했는지 여부 등이 아니라 승인신청일 이전에는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혼용작업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이라는 법률 요건의 흠결로 인해 ‘부분적 제품과세’에 관한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검토 의견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제2조 제1호),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뜻하는데(제2조 제3호),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제188조 본문), 이들 물품이 보세공장에서부터 국내로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봐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품과세’라고 한다.

한편 「관세법」은 ‘제품과세’를 하는 경우라도 내국물품인 원재료의 가격을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제도(제188조 단서)와 내국물품인 원재료와 제조과정

에서의 부가가치를 제외하고 외국물품 상태인 원재료의 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 ‘원료과세’제도(제189조)를 규정하고 있다. 혼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작업의 성질·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이고(「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2항), 원료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1심에서는 「관세법」 제97조 제2, 3항 등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제188조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라고 해 ‘미리’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문구 그대로 해석해 사후승인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는 단순히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혼용작업을 하는 경우’에 부분적 제품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리’ 또는 ‘사전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원고가 혼용작업 개시 이후에 혼용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원고에게 혼용작업의 사후승인도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해 혼용작업 개시 이후에 혼용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1. 11. 18. 2건의 혼용승인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신청일 이전의 작업기간을 기재해 신청한 사실, 위 각 신청서에는 작업기간이 2011. 9. 20. ~ 2012. 1. 30. 혹은 2011. 9. 30. ~ 2012. 12. 1.로 기재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혼용작업에 대한 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와 같은 승인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에도 혼용승인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세법」에는 ‘미리 승인을 받고’ 또는 ‘승인을 받고’라고 표현된 조문이 있는데, 대상판례는 이러한 조문을 명확하게 해석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최 민 호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2관

I. 개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됐다. 정부효율부는 연방 정부의 지출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부서로 머스크는 비백 라마스와미와 함께 조직을 이끌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의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 능력을 활용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머스크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규정은 제조업체가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의 수를 2,500대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머스크의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며,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2에서 레벨3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으며 2022년 기준 자율주행 레벨2 및 레벨3 기술 탑재율은 각각 전체 차량의 15%와 2%다.

다음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박람회 ‘CES’가 열린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에서 글로벌 완성차·상업용차량·전장 기업들이 서로 기술을 뽐내고 있었다. 웨스트홀은 모빌리티 기업들이 주로 모인 곳으로, ‘라스베이거스 모터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매년 신기술과 새로운 개념을 보여줬으나, 이번 CES 2025에 불참했다.

글로벌 완성차 1위 업체인 일본의 도요타가 5년 만에 CES에 돌아왔다. 2020년 당시 도요타는 일본 후지산 기슭에 70.8헥타르(70만 8000㎡) 규모의 실험 도시로 ‘우븐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무인 자율주행 차량 분야에서도 경쟁이 치열했다. 무인 택시를 운영하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와 중국의 전기차 기업 ‘지커(Zeekr)’에 많은 관람객이 관심을 보였다. 지커는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 운영하는 차량이다.

웨이모는 재규어 차량에 I-Pace 전기차를 전시했다. 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다. 차량 사방에 카메라가 설치됐는데, 언뜻 봐도 10여 개는 되는 듯했다. 지커는 올해 ‘Zeekr RT’ 양산을 시작한다. 이 역시 웨이모의 차세대 자율주행 택시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다른 미국 아마존 자율주행 택시 자회사 죽스(ZOOX)도 전시관을 차렸다. 정육면체의 귀여운 모양인

죽스의 차량은 라스베이거스를 중심으로 주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업용 차량 역시 CES 2025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했다. 미국 농기계 전문 기업 ‘존디어’와 일본의 건설 장비 업체 ‘고마츠(KOMATSU)’는 각각 무인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했다. 사람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 기능으로 장애물을 피하고 제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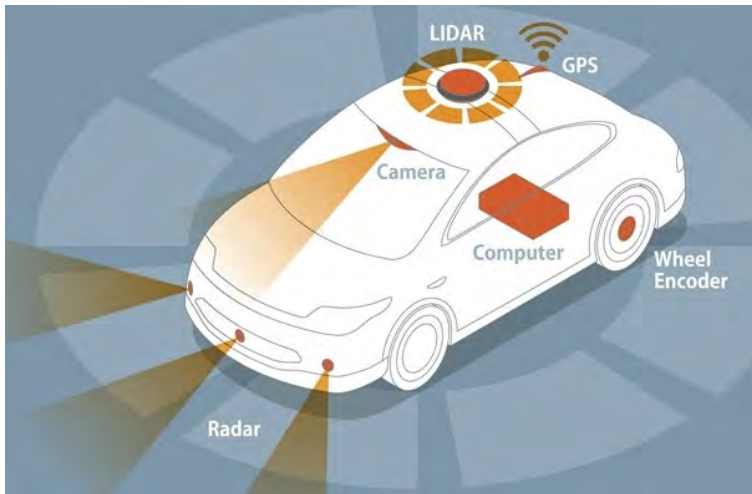
※ 출처 : 조선일보

이번 호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 알아보고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의 품목분류를 살펴보겠다.

II.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동차(Automated Vehicle)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는 ‘Automated Vehicle’이라고도 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지칭하는 ‘Autonomous’가 사람과 같은 인격을 강조한 개념이라면 ‘Automated’는 기계적인 운전 자동화를 의미한다.

●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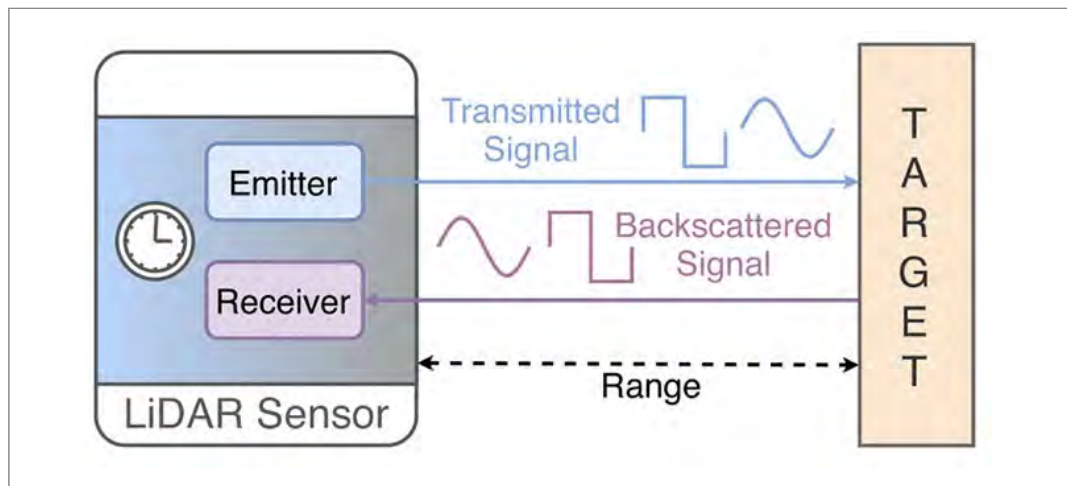
1. 자율주행의 원리

자율주행은 차량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기술이다. 이를 위해 차량은 다양한 센서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자율주행의 원리는 크게 환경 인식,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경로 계획, 그리고 결정 및 제어의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차량은 환경 인식을 통해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 LiDAR, 레이더, 초음파 센서, GPS 등의 다양한 센서가 사용된다. 카메라는 도로의 차선, 교통 신호, 보행자 등을 인식하고, LiDAR는 레이저를 이용해 주변의 3D 정보를 수집한다. 레이더는 물체의 속도와 거리를 감지하며, 초음파 센서는 가까운 물체를 탐지한다. 이러한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차량 주변의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 라이더 센서의 작동 원리 ●



출처 : 삼성 SDS

다음으로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 단계에서 차량은 자신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이를 위해 GPS와 관성항법장치(IMU)를 사용하며,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작성(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술을 통해 주변 환경의 지도를 생성하고 자신의 위치를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기존에 만들어진 정밀 지도를 참고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설계한다. 그다음 경로 계획 단계에서는 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결정한다. 여기에는 목적지까지의 큰 그림을 설계하는 전역 경로 계획과 실시간으로 장애물을 회피하며 이동할 세부적인 경로를 계산하는 지역 경로 계획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결정 및 제어 단계에서는 차량이 환경 인식과 경로 계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차량을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가속, 제동, 방향 전환 등 구체적인 주행 명령을 실행하며,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주행 전략을 조정한다.

이처럼 자율주행은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센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알고리즘의 신속한 처리가 핵심이다. 이를 통해 차량은 스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2. 자율주행 단계별 특징

자율주행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자동차기술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는 자율주행 기술을 총 6단계로 세분화해 정의했다. 이는 현재 글로벌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 Level 0, 비자동화(No Automation)

0단계는 운전자의 개입을 필수로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운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며,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의 긴급상황을 알려주는 단순 보조 기능만 수행한다.

■ Level 1, 운전자 보조(Driver Assistance)

다음 1단계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를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한다. 자동차의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보조 역할을 한다. 아직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반드시 잡고 조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Level 2, 부분 자동화(Partial Automation)

2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조작하고 상시 모니터링은 필수다. 1단계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1단계에서 단순히 운전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면 2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커브에서 방향을 조종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보조주행이 가능하다. 현재 새롭게 출시되는 자동차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다.

■ Level 3, 조건부 자율주행(Conditional Automation)

3단계로 들어서면서부터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 제어와 주행 중 변수 감지를 할 수 있다. 고속도로처럼 특별한 방해 없이 운전 가능한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게 된다. 2단계와 달리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위험 요소나 변수가 발생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 개입을 요청한다.

■ Level 4, 고도 자율주행(High Automation)

4단계는 고속도로 같은 특정 조건의 구간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주행 제어와 주행 책임 등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주어진다. 운전자의 개입은 악천후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단계로 자율주행의 시스템이 점차 고도화됐음을 알려주는 단계다.

■ Level 5, 완전 자율주행(Full Automation)

마지막으로 5단계는 운전자가 없어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어떤 개입도 필요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한다. 운전석을 비롯해 모든 제어 장치도 필요하지 않은 단계다.

● 자율주행의 단계별 기능 ●

운전자 보조 기능				
	3단계	레벨1	레벨2	레벨3
명칭	자율주행 없음	운전자 지원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동화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운전대 상시 잡고 있어야 함)	시스템 요청시 (제어권 전환시 운전대 잡고 있어야 함)
자동화 구간	없음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자율주행 기능				
	레벨4		레벨5	
명칭	고도 자동화		완전 자동화	
운전주시	작동구간 내 불필요(제어권 전환 없음)		불필요	
자동화 구간	특정구간		전 구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3.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술

1) 운전자의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 또는 비전 시스템

운전자는 도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시각으로 정보를 습득한다. 앞 차와 자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파악해 가까워지면 브레이크를 밟고 멀어지면 정해진 선에서 속도를 낸다. 즉 눈이 받아들이는 가시광선에 따라 사물을 인지하고 주행 정보를 파악하며 운전에 관한 각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율주행 기술은 사람의 시각적 인지와 주행 판단 과정을 고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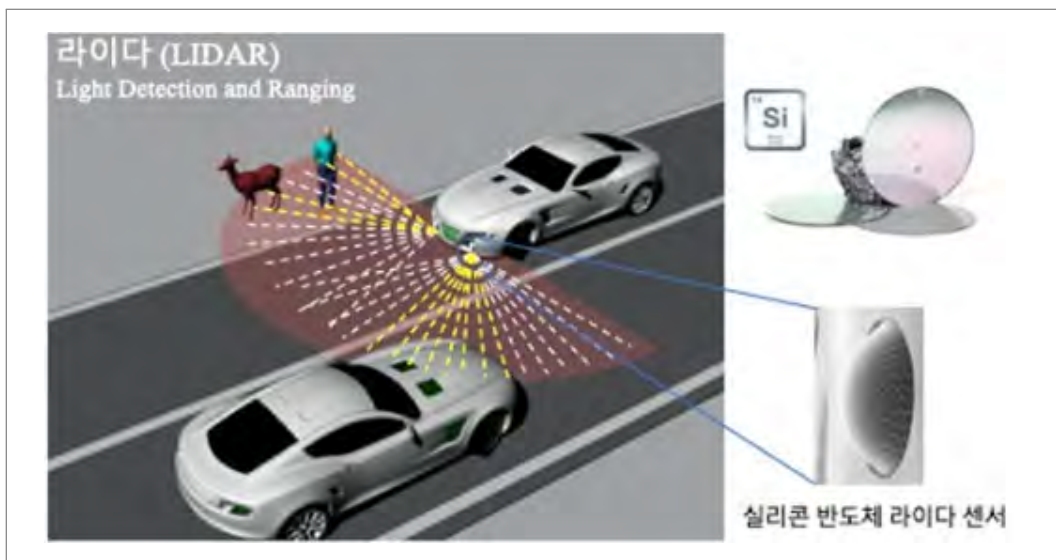
히 닮았으며 대표적인 기술로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들 수 있다.

①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라이다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센서다. 라이다는 특정 기기에서 발사한 빛이 다른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라이다 기기 주변에 있는 물체에 닿은 빛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게 된다.

라이다의 작동 원리는 빛의 속도인 광속이 초당 2억 9,979만 2,458m인 점을 이용해 레이저 펄스의 형태로 라이다에서 발사된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다. 보통 라이다는 한 번만 빛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수백만 빛을 발사하며 이를 통해 3차원 공간을 시각화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라이다는 자율주행 분야뿐 아니라 실내 지도 제작,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 라이더 센서 개념 ●



출처 : 연세대 안종현 교수

② 비전 시스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테슬라는 라이다에 긍정적이지 않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에 대해 “Doomed(운이 다하다, 비운을 맞다)”라며 부정적 평을 내놓은 적도 있다. 라이다나 레이더보다는 비전 기술의 성능에 우호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테슬라는 라이다 대신 테슬라만의 비전 시스템인 ‘Tesla Vision’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Tesla Vision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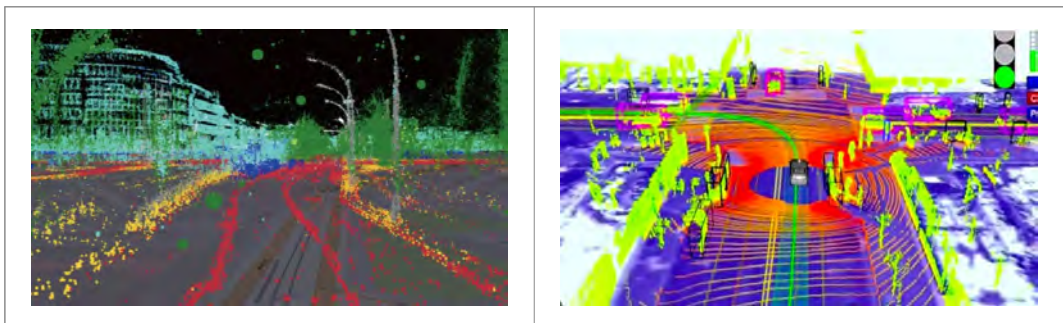
Autopilot(오토파일럿), Enhanced Autopilot(강화된 오토파일럿), Full Self-Driving Capability(완전 자율주행) 등 테슬라의 3가지 자율주행 기술의 기반 역할을 한다. 작년 10월 2일에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Ultrasonic Sensor(초음파 센서)를 Tesla Vision으로 교체한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기도 했다.

Tesla Vision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반의 시스템이다. 테슬라 차량에 여러 카메라를 달아 모든 방향의 시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된 모델로 인식한다. 차량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현재 도로의 상황은 어떤지, 사람이 눈으로 보듯 Tesla Vision이 예측·인식한다.

2)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SLAM 알고리즘

두 번째로 살펴볼 기술은 동시적 위치 추정과 지도 생성이라 불리는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다. SLAM은 미지의 환경에서 특정 객체가 센서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지도를 그려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1986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IEEE 로보틱스 및 자동화 컨퍼런스(IEEE Robotics and Automation Conference)에서 로봇의 자율주행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처음 제안됐고, 이후 실내외 및 해저 정보 파악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으로 연구돼 왔으며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SLAM으로 작성한 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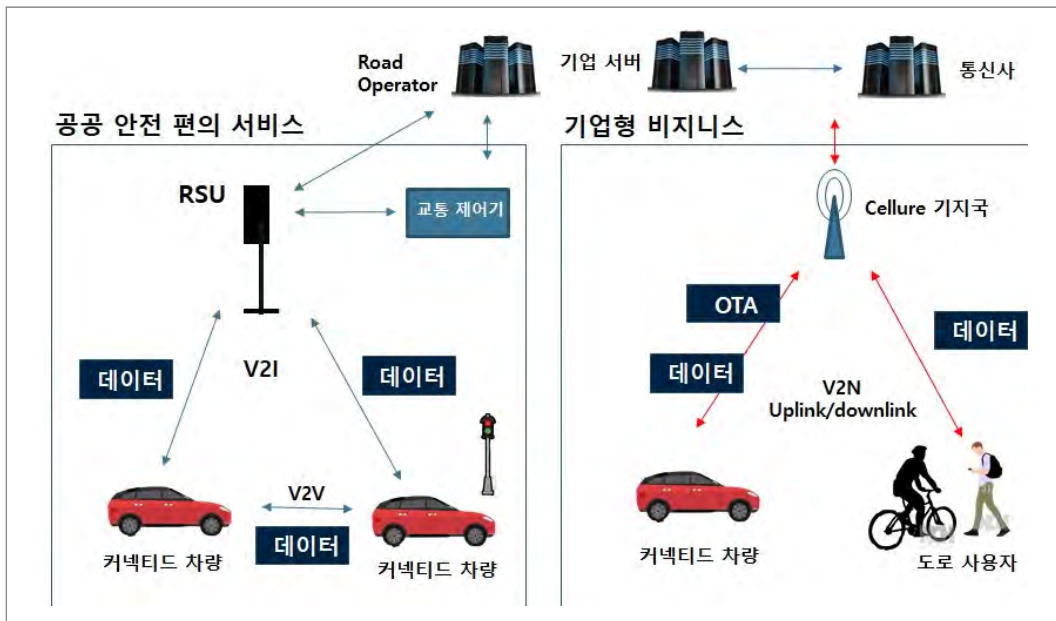
3) 주변과 통신하는 V2X 기술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기술 세 번째는 V2X(Vehicle-to-Everything)이다. 자율주행차는 홀로 독립적으로 주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V2X는 자율주행차가 주변 기기 혹은 인프라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일체를 뜻한다. 그래서 V2X는 여러 하위 기술을 나누는 개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 V2X 하위 기술

- 1) V2D(Device) : 주변 기기와 통신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의 기술
V2D는 Vehicle-to-Device를 뜻한다. 스마트폰 등 주변 기기와 자율주행차가 통신하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은 기술이 포함된다.
- 2) V2I(Infrastructure) : 주변 인프라와의 통신으로 데이터 수집
V2I는 차량과 주변 인프라와의 통신을 뜻하는 Vehicle-to-Infrastructure다.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시각 정보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지만, V2I를 통하면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닌 데이터 값 자체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도로 표면 온도, 신호등의 값, 표지판의 안내 정보, 터널 내 기온 등 차량이 지나가는 구간에 구축된 시설로부터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 3) V2G(Grid) : 배터리 전력 활용 기술
자율주행차는 대부분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한다. 전원 공급 장치 혹은 전력망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데, V2G 즉 Vehicle-to-Grid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배터리 전력 활용과 직결된다.
- 4) V2P(Pedestrian) : 보행자와 통신하는 기술
V2P는 보행자(pedestrian)와 통신하는 Vehicle-to-Pedestrian으로 빠질 수 없는 V2X의 요소다. V2P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개별 보행자 1명 혹은 다수의 보행자와 소통할 수 있다. 차량이 움직임, 이상 상황 등을 보행자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보행자는 자신의 디바이스를 통해 근처의 차량이 보내는 데이터를 수신하게 된다. 덕분에 주변 상황 파악을 오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보행자는 좀 더 면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 V2X를 통한 데이터 수집 ●



출처 : 산업부

III. 경합세번

다음은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품의 품목분류다.

1. 프렌즈 볼

강아지 등 애완동물용 장난감 공 로봇으로, 내장된 프로그램과 모터, 센서 등에 의해 자율주행, 강아지와 상호작용,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전·후진, 좌·우회전 및 정지, 진동, LED 점등 등 다양하게 움직이는 물품으로 제8509호 해당 여부

2. Drive Orin Module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모듈로서 제8538호에 해당 여부

3. RPLIDAR

측정한 거리 값을 자율주행 등의 로봇 기기의 운영체제에 전달하게 되면 해당 기기 운영체제에서 전달받은 값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물품으로 제9031호 해당 여부

품목번호	품명	세율
8509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40 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일주스·채소주스 추출기	
80	그 밖의 기기	
1000	커피분쇄기	기본 8%
2000	얼음분쇄기	기본 8%
3000	바닥광택기	기본 8%
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기본 8%
9000	기타	기본 8%
90 0000	부분품	기본 8%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품목번호	품명	세율
3000	터치감응식 자료입력장치('터치스크린'이라 불림)(영상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는 기기에 결합되어 디스플레이 영역 내의 접촉여부와 위치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며, 제시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함)	양허 0%
4000	배전용의 것	기본 8%
50	전기제어용의 것	
5010	수치 제어반	기본 8%
5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기본 8%
5090	기타	기본 8%
20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3000	배전용의 것	기본 8%
4000	전기제어용의 것	기본 8%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양허 0%
90	기타	
1000	개폐기의 것	기본 8%
2000	자동차단기의 것	기본 8%
3000	계전기의 것	기본 8%
5000	전기제어용의 것	기본 8%
9000	기타	기본 8%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10 0000	균형시험기	양허 0%
20 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기본 8%
4	그 밖의 광학식 기기	
41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41 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양허 0%
9000	기타	양허 0%
49	기타	
9000	기타	양허 0%

IV. 관련 규정

□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 제8509호 해설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분리형의 전동기로 구동되는 기기(플렉시블 샤프트·전동벨트·그 밖의 전동장치에 의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하며, 또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하도록 만든 기기(예 : 식품공업용·굴뚝 소제용·기계 클린용·도로 소제용의 기기)는 포함하지 않으며 ;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8210호나 제84류에 분류한다.

이 호의 기기에는 다음의 두 그룹이 있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A) 중량에 관계없이 여기에 분류하는 한정된 몇몇 품목

이 그룹은 다음 물품만으로 구성한다.

(1) 바닥광택기(floor polisher)(왁싱 장치와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를 가진 것에 상관없다)

(2) 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와 믹서(mixer) ... <중략> ...

(3) 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마루를 쓸고, 닦고, 씻어내는 기기와 세척 후 오수나 비누거품을 흡수하는 기기

(2) 마루를 닦기 전에 마루에 광택나는 재료를 살포하는 기기 : 이 기계에는 보통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한다.

(4) 감자나 그 밖의 채소용의 탈피기(peeler)·치퍼(chipper)·절단기(cutter) 등

(5) 모든 종류의 세절기 ... <중략> ...

(6) 칼 가는 기계(knife sharpener)와 나이프 클리너(cleaner)

(7) 전기칫솔(electric tooth brush)

(8)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와 공기제습기(dehumidifier)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치

위에 열거한 기기 중의 많은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환성 부분품이나 보조 장치와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면, 절단·분쇄·포립(泡立 : whipping)·잘게 저미는 것 등에 사용하는 식품용 믹서 ; 호우닝(honing)과 연마 장치를 갖춘 슬라이서 ; 연마브러시 세트를 갖춘 마루 세정기 ; 비눗물의 공급 장치, 오수나 비누거품을 제거하는 흡수장치를 갖춘 세정기 등이다. 이와 같은 기기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여분의(extra) 호환성 부분품과 분리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의 중량은 그 기기가 앞에서 설명한 (B)의 조건 하에 이 호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제8537호 해설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 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fuse)]를 보드·패널(panel)·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valve)·전압조정기·가감저항기(rheostat)·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발전소·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 일반적으로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데 사용한다.
-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 이들은 후속되는 작업의 선택에 의하여 변화되도록 한 것이며, 이들은 보통 세탁기와 접시 세척기와 같은 가정용의 전자기기에 사용한다.
-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 : 특수 기능[예 :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연산(演算 : arithmetic)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호에는 제9032호의 자동제어장치를 제외한다.

□ 관세율표 제8538호의 용어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8538호 해설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boards for switchboard)를 포함한다. 다만, 이것들은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관세율표 제9031호의 용어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

■ 제9031호 해설서

(1)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A)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기계부분품의 균형시험용 기계(machine for balancing mechanical parts)(동적·정적·전자식 균형 장치가 부착된 것)

... <중략> ...

(2) 테스트벤치(test bench) : 엔진과 모터·발전기·펌프·속도계·회전계 등에 사용하며 프레임(frame) 과 측정이나 검정용 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3) 연료시험에 사용하는 종류의 이화학 기기[특히 석유의 옥탄가(octane index)나 디젤엔진오일의 세 탄가(cetane index) 측정에 사용한다]

(4) 차량용 모터의 시험용과 조절용 기기 ... <중략> ...

(5) 면적계(planimeter) : 설계도·도표·가죽 등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 장치에 결합된 추적 점(tracing point)이 측정되는 면적의 윤곽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 <중략> ...

(6) 머리 윤곽 측정기(head contour measurer) : 모자제조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종이를 천공하여 조작한다.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 장치·전자·광전자·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 <중략> ...

(9) 사인바(sine bars)와 조정대가 있는 사인바 ... <중략> ...

(10) 기포수준기(氣泡水準器 : bubble level)(다수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

... <중략> ...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수준기(水準器)를 제외한다(제9015호)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11) 경사계(clinometer)[지침계나 십자선형·클라이노미터룰(clinometer-rule)·클라이노미터분 도기(clinometer-protractors)] : 수평면과 비교하여 수평을 검사하거나 면의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다. ... <중략> ...

(12) 다림줄(plumb-line)

(13) 구면계(spherometer) ... <중략> ...

(14)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

(15) 다차원 측정기구[좌표측정기(CMMs) ... <중략> ...

(16) 렌즈의 심출기(opticians' centring machine) : 렌즈의 축과 중심을 결정하고 표시하는 것.

(17) 측미(測微 : micrometric) 표준측정기 ... <중략> ...

(18) 진동·팽창·충격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 <중략> ...

(19) 방직용 섬유재료의 검사용 기기 ... <중략> ...

(20)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한다.

(21) 기어(gear)시험기 :

... <중략> ...

(22) 점토 등의 수축율 측정용 기기[시료는 소성(燒成 : firing) 과정의 측정을 위하여 소성(燒成) 중의 세라믹 노(ceramic furnace)에서 채취한 것](pyroscope) : 이 기기는 때로는 캘리퍼스(callipers) 와 유사하나 임의적인 단위로 눈금이 매겨져 있다.

(23) 불규칙면 측정장치(가죽 등의 표면) ... <중략> ...

(24) 실(yarn)의 직경 측정장치 ... <중략> ...

(25) 압연 중의 금속의 시트(sheet)나 스트립(strip)의 두께를 연속적으로 측정 검사하는 장치

(26) 초음파 두께 측정 계기 ... <중략> ...

(27) 재료의 흠(fault)·균열(fissure·crack)이나 그 밖의 결함(defect) 검출장치[금속의 봉(bar)·관(tube)·프로파일(profile)·스크루(screw)·침(needle) 등의 기계가공품 등에 사용한다] : 측정은 자기의 변동을 음극선관으로 관찰하거나 투자율(透磁率) ... <중략> ...

(28) 시계나 시계부품의 검사용 기기

... <중략> ...

(29) 응력(stress)과 왜력(strain)의 전기식 측정용 기기 ... <중략> ...

(30) 로드셀(load cell) : 힘(중량을 포함한다)의 작용에 따른 변화를 전압의 변화로 변환시켜 준다. 이때의 전압의 변화량은 보통 측정기·제어기·계량기 등에 의하여 탐지되며 필요한 단위로 나타난다.

(31) 전자크로노그래프(electronic chronograph)와 전자크로노스코프(electronic chronoscope) : 전기접촉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것. 회로(contact)가 폐쇄되는 사이에 고저항으로 부하되는 커패시터(capacitor)로 구성되며 시간단위로 검정하는 진공관 전압계를 사용한다.

(B)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

(1)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 <중략> ...

(2) 콤파레이터 벤치(comparator bench) ... <중략> ...

(3) 메저링 벤치(measuring bench) ... <중략> ...

(4) 광파간섭계(interferometer) ... <중략> ...

(5)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 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한다.

(6) 신속충격차동측정자(rapid impulse differential feeler)와 광학적관측기(optical viewer)를 갖춘 장치 ... <중략> ...

(7) 얼라인먼트 텔레스코프(alignment telescope) ... <중략> ...

(8) 광학식 자(optical rule) ... <중략> ...

(9) 측미(測微 : micrometric) 판독기 ... <중략> ...

(10) 광학식 측각기(optical goniometer)나 각도 게이지(angle gauge) ... <중략> ...

(11) 포시미터(focimeter) : 안경용 렌즈의 도수측정용

... <중략> ...

(II)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윤곽투영기 : 매우 여러 가지 물품의 모양과 치수의 검사용[특정 모양으로 절단한 조각·소형기계장치·스크루(screw)·스크루 탭(screw-tap)·체이서(chaser)용 등의 기어(gear)와 피니온(pinion)]이나 면(surface)의 시험용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윤곽투영기에 있어서는 램프로부터의 광(光)이 스테이지(stage) 위에 올려진 시료에 직접 닿기 전에 응축에 의하여 빔(beam)으로 집중한다. 시료는 여러 번 반사된 후 광선 속에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프리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투영기에 내장된 스크린 위에 최종적으로 투사(projected)한다. 윤곽투영기 중에는 표준품을 놓는 중간 스테이지(stage)를 갖춘 것도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 : 면적계용 암(planimeter arm)·다이얼콤퍼레이터(dial comparator)용 스탠드와 측정 테이블

V. 품목분류

1. 프렌즈볼

결정 세번 제8509.80-9000호

- 개요
- 강아지 등 애완동물용 장난감 공 로봇으로, 내장된 프로그램과 모터, 센서 등에 의해 자율 주행, 강아지와 상호작용,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전·후진, 좌·우회전 및 정지, 진동, LED 점등 등 다양하게 움직임
 - 공 로봇, 무선충전 거치대, 충전용 USB 케이블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상태
 - 크기 : 직경 62mm / 무게 : 약 150g
- 주요 구성 요소
- PCB : 3축 가속도 센서(외부자극 인지), 모터 컨트롤러, LED 컨트롤러, 블루투스 모듈 등으로 구성돼 전체적인 움직임 제어
 - 모터(좌, 우) : PCB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에 따라 좌·우 바퀴에 동력을 제공
 - 코일 : 무선충전용 코일
- 물품 설명
- 프레임 : 내부 구성요소들을 지지해주는 틀
 - 바퀴 : 모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전·후진, 좌·우회전 등 동작
- 기능
- 자율주행 : 펌웨어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직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등을 조합하며 스스로 움직임
 - 상호작용 : 강아지의 자극에 따라 움직임
 - 공을 살짝 만지며 기울었을 때 : 제자리에서 진동하며 LED가 서서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짐
 - 공을 약하게 때렸을 때 : 백색 불빛을 내며 짧은 시간 전·후진 12회 반복
 - 공을 세게 때렸을 때 : 적색 불빛을 내며 가해진 충격만큼 3초간 움직이다가 정지한 후, 2초간 가볍게 튀면서 굴러감
 - 공을 입에 물었다가 떨어뜨렸을 때 : 공이 직진으로 4초 움직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본 물품은 강아지 등 애완동물용 공 로봇 본체와 공 로봇을 충전하기 위한 무선충전 거치대와 케이블을 함께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공 로봇에 있음.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3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 … <중략> …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20킬로그램 이하의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함.

관세율표 제8509호의 용어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해설함.

본 물품은 주로 가정에서 강아지 등 애완동물 장난감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를 자장한 20kg 이하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2. Drive Orin Module

결정 세번 제8538.90-5000호

○ 개요

-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되는 데이터 연산 처리를 위한 프로세서 모듈로서, 자율주행 기능을 제어하는 PCB Ass'y에 장착돼, 외부 센서(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받아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처리한 정보를 MC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 MCU에서는 연산부에서 송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직을 구현하고, UX 구현을 위해 클러스터나 조향 및 제동을 위해 EPS 및 ESC 등에 CAN 통신으로 제어신호를 전달함.

물품 설명

○ PCB Ass'y 주요 구성요소

- 제어판단부(MCU) : 연산부에서 송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직 구현 및 자율주행 제어
- 연산부(신청 물품) : 입력 정보에 따라 알고리즘 수행
- 입출력부 : CAN 통신을 기반으로 차량제어 시그널 전달
- 센서입력부 : 외부센서 데이터를 연산부로 전송
- 전원부 : 배터리 전원을 제어기 내부로 공급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중략> …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결정 사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 : 특수 기능[예 : 논리적인 것·연속적인 것·시간적 조절·계산·연산(演算 : arithmetic)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module)을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자율주행 기능을 제어하는 PCB Ass'y에 장착돼 외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받아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처리한 정보를 제어 판단부인 MC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어기의 부분품으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5000호에 분류함.

3. RPLIDAR

결정 세번 제9031.49-9000호

- 개요
- TOF 방식을 이용해 사물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본체(RPLIDAR) 1대, USB 어댑터 1개, 라이다 케이블 1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 1개, 파워 케이블 1개가 소매용 포장상태로 제시됨.
 - 측정 원리 및 측정 값
 - 측정 원리 : 적외선을 방출한 뒤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빛의 값(시간)을 내부 DSP를 통해 거리 값으로 출력
 - 측정 값 : 측정 대상물과의 거리 값
 - 용도
- 물품 설명**
- 자율주행로봇, 로봇청소기 등 자율주행이 필요한 로봇기기에 USB 2.0 포트를 통해 연결됨.
 - 본 물품이 측정한 거리 값을 자율 주행 등의 로봇 기기의 운영체제에 전달하게 되면 해당 기기 운영체제에서 전달받은 값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함.
 - 내부 구성요소
 - 발광부 : 적외선을 물체에 발사
 - 수광부 : 사물에 맞고 돌아오는 적외선을 수신
 - BLDC(Brushless DC Motor) : 발·수광부가 360도 회전을 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위치에 서의 거리 값을 측정함.
 - Otopcal Window : 본체 외부 케이스

본 물품은 자율주행이 필요한 로봇기와 연결해 적외선을 방출한 뒤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빛의 값(시간)을 내부 DSP를 통해 거리 값으로 출력하는 기기로서 본체(RPLIDAR) 1대, USB 어댑터 1개, 라이다 케이블 1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 1개, 파워 케이블 1개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됐고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RPLIDAR)에 있음.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호에서는 '그 밖의 광학식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결정 사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에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comparator)·측정 장치·전자·광전자·압축공기식센서(자동식인 것 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적외선을 이용해 거리 값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광물성 시트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유리섬유’란 주로 규산염으로 이뤄진 무기물 계열을 섬유상으로 뽑은 물질이다. 불화수소를 제외한 산과 유기용매에 안정성을 가지며, 무거워서 의복용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방화성이 요구되는 커튼과 전기담요, 실내의 천장과 벽지, 방음 및 보온재 등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섬유보강플라스틱(FRP, Fiber Resisted Polymer) 등에 보강제로 사용한다.

유리섬유는 분말 형태로 흡입하면 기침과 같은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피부에 잘못 접촉하면 따갑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비교하면 꽤 안전한 물질로 평가받아 석면의 대용품으로 많이 이용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유리섬유 웹 일면에 광물성 재료 혼합물(모르타르, 첨가제)을 도포한 시트상으로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인 제 6811.82-0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 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 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광물성 재료 혼합물과 유리섬유 웹을 결합한 제품으로 함량 비율(광물성 혼합물 88% > 유리섬유 웹 12%) 및 두께(광물성 혼합물 약 0.25mm > 유리섬유 웹 약 0.17mm)로 볼 때도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이 제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리섬유 웹은 광물성 혼합물을 지지 및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 웹 일면에 그 밖의 광물성 재료 혼합물을 도포한 시트상으로 유리섬유 웹은 보강재로써 본질적 특성은 광물성 혼합물에 있다고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99-0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THER SHEETS, PANELS, TILES AND SIMILAR ARTICLES	6811.82-0000 (FCN1 0%)	Articles of mineral substances	6815.99-0000 (FCN1 2.1%)

코끼리 난동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태국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코끼리를 농사나 벌목 작업 등에 이용해 왔다. 차량이나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한 깊은 산속에서 벌목한 나무를 산 아래까지 옮길 힘과 지능이 코끼리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이웃 나라 미얀마와의 전쟁에서도 코끼리가 이용됐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수백 명의 병사 뒤통을 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다.

요즘은 동남아시아에서 코끼리는 오지 여행이나 공연의 주인공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기도 한다. 1월 8일(현지시간) 인도의 한 축제 현장에서 벌어진 코끼리 난동 사건이 신문과 TV에 보도됐다. 금빛 장신구를 두른 코끼리 공연을 보러 구름처럼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돌변하더니 코로 한 남성의 다리를 붙잡고 거칠게 내던져 버리고 아비규환이 된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다. 코끼리의 난동에 놀란 사람들이 일제히 현장에서 도망치려다 수 명이 다치고 중상자도 발생했다고 한다.

또 몇 년 전에는 태국의 코끼리 보호소에서 스페인 관광객이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체험을 하던 중 코끼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바로 스페인 여대생이 코끼리의 상아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사고다. 그런가 하면 술에 취한 코끼리 관련 뉴스도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인간과 코끼리의 공생관계에서 빚어진 안타까운 사건들인 것이다.

관세율표에서 살아있는 코끼리는 제0106호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other live animals)’에 분류된다.

제0106호 해설서 (A)에서는 “(1) 영장류, (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 매너티와 듀공(dugong)(바다소목의 포유동물 : 물개·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pinnipedia)아목(亞目)의 포유동물], (3) 그 밖의 포유동물[예 : 순록·고양이·개·사자·호랑이·곰·코끼리·낙타·(단봉 낙타를 포함한다)·얼룩말·토끼·산토끼·사슴·영양과의 것들을 제외한다)·서남아시아산의 영양·여우·밍크·모피 목장용 동물] … <중략> … 이 호에는 서커스·관람용 동물원이나 그 밖의 유사한 순회 동물쇼 용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동물은 제외한다(제9508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커스·관람용 동물원의 동물은 제01류가 아닌 제95류에 분류되는 것이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 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원금의 50% 감액 지급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116호_2025.1.27.

최신개정법령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93호, 2025.1.2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7조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699호, 2025.1.21.)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경우, 외국물품 등에 대한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 등을 폐기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를 “제2항,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을 한 자
2.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자
3.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1조 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5229호, 2025.1.23.)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산물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등 9개 물품에 대해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당근 및 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로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7]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10	오렌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10,000톤

[별표 8]

2025년 1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4	양배추·꽃양배추·콜라비(kohlrabi)·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90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양배추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7,500톤
		2. 배추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0,000톤

[별표 9]

2025년 1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 90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00,000톤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 (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30	파인애플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6,000톤
0804 40	아보카도(avocad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000톤
0804 50	구아바(guava)·망고(mango)· 망고스틴(mangostee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망고 (mang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5,000톤
		2. 망고스틴 (mangosteen)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1,400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2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 21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감귤은 제외하고,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2,800톤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05 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6,000톤
0810	그 밖의 과일(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60	두리안(durian)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15	1,700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30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한다.	15	2,000톤

[별표 10]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비트(beetroot)·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20,000톤
0706 90	기타			
	1. 무		0	12,000톤

고시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6호, 2025.1.2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4-57호, 2024.1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5-6호(2025.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02	2025-6호('25.1.20.)	청정원 홍초 복분자 등 3건	
603	2025-6호('25.1.20.)	Re-esterified oil; Green Tea Seed Oil Infusion 등 2건	
604	2025-6호('25.1.20.)	콩순이 율동동요 등 7건	
605	2025-6호('25.1.20.)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2건	

602. 청정원 홍초 복분자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호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Brewery vinegar; 청정원 홍초 마테레몬; R.KOREA	품목분류2과-7326 (‘14.11.03.)
2	Brewery vinegar; 청정원 홍초 복분자; R.KOREA	품목분류2과-7278 (‘14.10.30.)
3	Vinegar ; Apple vinger w lingoberries / apple win vinegar with lingonberry	품목분류2과-6068 (‘14.09.04.)

○ 물품설명

- 소량의 발효식초에 과실농축액 등을 혼합 조제한 음료베이스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209.00-1000호(①,②) 제2209.00-9000호(③)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1020호

○ 변경사유

- 총산 함량이 식품공전에서 정한 식초류의 총산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음료베이스이므로 제 2106.90-102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3. Re-esterified oil; Green Tea Seed Oil Infusio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egetable oil; Veramaris	품목분류2과-8503 (‘21.08.31.)
2	Re-esterified oil; Green Tea Seed Oil Infusion	품목분류2과-8500 (‘21.08.31.)

○ 물품설명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515.90-9090호(①), 제1516.20-2090호(②)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518.00-9090호

○ 변경사유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오일의 혼합물이므로 제1518.00- 909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4. 콩순이 율동동요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printed books ; 콩순이 율동동요 ; PR.CHNA	품목분류4과-5612 (‘18.11.21.)
2	Other printed books ; ccm sound book ; PR.CHNA	품목분류4과-7571 (‘17.11.14.)
3	Other printed books ; SOUNDBOOK (동요백화점) ; PR.CHNA	품목분류4과-7570 (‘17.11.14.)
4	동물원동요(빛나는 리듬 사운드북)	품목분류3과-5723 (‘16.12.16.)
5	SOUND BOOK; 핑크퐁 사운드북 마더구스; 10 SOUND; PR.CHNA	품목분류2과-11508 (‘16.08.25.)
6	Children’s books; 우리동요 CHILDRENS STORY BOOK	품목분류2과-6584 (‘15.08.21.)
7	Tambourine book(탬버린을 찹찹)	품목분류1과-431 (‘10.09.03.)

○ 물품설명

- 그림이 주요한 아동용 그림책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901.99-100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903.00-0000호

○ 변경사유

- 글림이 주체인 아동용 그림책이므로 제4903.00-000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5.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6 (2025.1.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protein substance	품목분류2과-7330 (‘13.09.27.)
2	Other protein substance; protastar	품목분류2과-435 (‘21.01.15.)

○ 물품설명

-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504.00-2090호

○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1020호

○ 변경사유

- 건조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이 90%미만인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제2106.90-1020호에 분류(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입법예고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15호, 2020.5.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2.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명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0-15호, 2020.5.8.)

2. 개정사유

- 1) 행정규칙(고시·훈령)에 혼재된 규정을 통합·재배열

현행	통합 개정후
<종전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총 60조) (※ 심사원칙, 환급절차, 관세조사, 업체관리)	⇒ <개정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총 102조)
<납세훈령>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총 34조) (※ 업무분장, 심사방법, 실적평가)	⇒ <폐지>
<보정훈령> 보정심사 대상 선별 및 운영 훈령(총 18조) (※ 선별방법, 심사의 확장, 시스템 처리)	⇒ <폐지>
<추징훈령>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총 13조) (※ 과세전자문위원회, 추징자문위원회)	⇒ <폐지>

- 2) 권역내세관 관세조사 권한 명시*

* 관세조사 주체 확대 : (종전) 본부 심층·심관 ⇨ (향후) 종전+권역내세관 심사부서

- 3) 납세신고도움정보 제공 후 오류 미점검·미치유 업체 심사 체계 마련
- 4) 용어정비(납세심사 ⇨ 세액심사, 종합심사 ⇨ 갱신심사 등)
- 5) 환급신청 증빙서류 중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6)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관련 조항 폐지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수정(1조, 2조, 3조, 18조, 3장, 38조, 39조, 58조, 별지3, 별지21 등)

- 납세심사 ⇨ 세액심사, 보정심사 ⇨ 사후세액심사, 종합심사 ⇨ 갱신심사
- FAX ⇨ 팩스, E-mail ⇨ 전자우편, 명기 ⇨ 작성, 잔여세액 ⇨ 남은 세액

□ 훈령의 정의 규정을 개정 고시에 흡수(제2조)

- 보정훈령 제2조의 '전산선별', '수작업선별', '보정심사시스템' ⇨ 개정 고시 제2조에 흡수
- 납세도움지침 제2조의 '정보제공대상기업', '납세신고도움정보', '납세신고도움정보시스템', '납세요류 치유' ⇨ 개정 고시 제2조에 흡수

□ 권역내세관 관세조사 권한 명시(제3조)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3.2.28.) 사항을 반영하여 권역내세관 세액심사 부서의 관세조사 권한 명시

□ 인용 고시의 개정 사항 반영(제5조)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 및 제61조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및 제48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22조 및 제45조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42조

□ 정기 수입세액 정산과 관련된 보정신청 관련 규정 삭제(제13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정기 수입세액 정산) 규정 삭제('20.1.15.) 사항 반영
⇨ 조문 삭제(정산업체 관리 세관장에게 보정신청건을 일괄 제출)

□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세관 명확화(제15조)

- 보정신청(제13조), 수정신고(제14조) 할 때와 같이 경정청구할 세관을 '납세신고 할 때의 세관장'으로 명시하여 혼란 방지

□ 세액심사비율을 본청의무할당에서 세관의 재량권 부여(제18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세관장이 정할 수 있다.

□ 정보제공 대상기업에 대한 세액심사 명확화(제46조)

- 납세 오류 위험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점검하지 않거나, 오류를 치유하지 않으면 사후세액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화

□ 환급금 양도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제63조)

- 중앙부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요청을 반영하여 환급금 양도 신청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생략

※ 행정안전부 주민과-3013, '24.4.22

□ 납세신고·세액심사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고시로 통합(4개⇨1개)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보정심사 대상 선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고시로 통합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

- 종전 고시 조문을 업무 순서에 맞게 재배열

- 폐지되는 훈령 안내 사항을 부칙에 규정

※ [붙임1] 개정 고시 조항 일람표, [붙임2] 개정 고시 서식 일람표

□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관련 규정 폐지

-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관세추징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의 과세전자문위원회, 추징결정전세관자문위원회 폐지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1조 ~ 제53조	○ 관세법 제38조
○ 제61조	○ 관세법 제38조의2
	○ 관세법 제38조의3
	○ 관세법 제39조
	○ 관세법 제42조의2
	○ 관세법 제117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 제54조 ~ 제60조	○ 관세법 제110조 ○ 관세법 제110조의2 ○ 관세법 제111조 ○ 관세법 제112조 ○ 관세법 제113조 ○ 관세법 제114조 ○ 관세법 제115조 ○ 관세법 제116조 ○ 관세법 제118조
○ 제62 ~ 제94조	○ 관세법 제46조 ○ 관세법 제47조 ○ 관세법 제48조 ○ 관세법 제106조 ○ 관세법 제106조의2
○ 제54조 ~ 제60조	○ 관세법 제110조 ○ 관세법 제110조의2 ○ 관세법 제111조 ○ 관세법 제112조 ○ 관세법 제113조 ○ 관세법 제114조 ○ 관세법 제115조 ○ 관세법 제116조 ○ 관세법 제118조

5. 시행일자 : 2025. 00.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당자 : 채정균사무관(042-481-7812), 서은정주무관(042-481-7863)
- 제출기한 : 2025. 2. 10.
- 제출방법 : (이메일) cuppy1@korea.kr, njcu@korea.kr
(팩스) 042-481-786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수출 및 반송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한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14.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4-28호, 2024. 6. 27.)
 ②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1호, 2020. 11. 27.)

1. 행정규칙명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00호, '25. 00. 00.)

2. 제정이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 4. 25.)에 따라 1)「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4-28호, 2024. 6. 27.), 2)「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1호, 2020. 11. 27.)를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

3. 주요내용

- 총칙(제1장)
-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 성실신고의 원칙
- 정식수출통관 절차(제2장)
- 수출물품 신고, 신고서 심사·검사 및 수리
 -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특수형태·전자상거래 수출
- 반송절차(제3장)
- 반송절차 적용범위, 반송물품 신고·심사·검사 및 취하 등
 - 반송신고 관련 보세운송신고, 세관내규 제정 및 준용규정

□ 목록통관 절차(제4장)

- 목록통관 방법 및 심사·검사
- 휴대반출 견본품 특례, 목록통관 신고수리 물품 적재이행

□ 수출물품등의 적재 이행관리(제5장)

- 수출·반송물품 적재이행 방법 및 분할·동시포장 적재
- 수출신고수리 취소·관리

□ 벌칙(제6장)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5. 시행일자 : 2025. 00.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 담당자 : 이현성 사무관(042-481-7825, lhs1201@korea.kr)
남기오 주무관(042-481-7802, namgo8520@korea.kr)
- 제출기한 : 2025. 2. 14.
-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2025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 2025년 2월 발간 —



5,160p.(상·하권 1세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엮음

한·필리핀FTA, 2025 HSK·WTO 일부개정 등
올해 개정된 세율과 고시를 한 눈에!

발간기념 **10%할인!!!**

₩128,888원 → **108,000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도서구매문의 02)3416-5112 | 온라인구매처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서비스

— 2024년 12월 오픈! —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